

〈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08 - 75 호〉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비축물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8년 6 월 2 일
기획재정부장관

비축물자의 범위

1	알루미늄류	8	임산물류 ³⁾
2	구리류	9	재활용원자재 ⁴⁾
3	아연류	10	긴급수급조절물자 ⁵⁾
4	연류		
5	주석류		
6	희소금속류 ¹⁾		
7	건설기초자재류 ²⁾		

- 1) 희소금속류는 니켈, 실리콘, 망간, 코발트, 바나듐, 인듐, 리튬, 탄탈륨, 게르마늄 등이 포함됨.
- 2) 건설기초자재류는 철근, 시멘트, 아스팔트 등이 포함됨.
- 3) 임산물류는 펄프, 골판지가 포함됨.
- 4) 재활용원자재는 금속 스크랩, 고지, 고철 등 원자재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자를 말함.
- 5) 긴급수급조절물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긴급히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를 말함.

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